

제 917 호
1982. 7. 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편집 : 공 보 관 전 명 호
전화 725-7834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72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1642 호 :	서울특별시개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.....	3
제 1643 호 :	서울특별시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.....	6
제 1644 호 :	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.....	9
제 1645 호 :	서울특별시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설치조례.....	10
제 1646 호 :	서울특별시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조례.....	10
제 1647 호 :	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개정조례.....	14
제 1648 호 :	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.....	17

〈이면계속〉

공 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◎ 규 칙

제 1980 호 :	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개정규칙	17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◎ 고 시

제 247 호 :	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	18
제 248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인가	18
제 249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인가	19
제 250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시행허가	20
제 251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20
제 252 호 :	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자명의변경허가	21
제 253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	22
제 254 호 :	운전자춘수사항지정고사	23

◎ 공 고

제 290 호 :	관인재교부및 폐기공고	24
제 291 호 :	도시계획사업 (전기공급설비) 준공공고	24
제 292 호 :	K.S 표시정지처분공고	25
제 293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공람공고	25
제 294 호 :	묘목및종자수출추천요령	26
제 295 호 :	도시계획사업 (학교) 완료공고	26
제 296 호 :	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	27
제 297 호 :	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및환지예정지지정	27
제 298 호 :	환지처분공고	28

◎ 교육위원회공고

제 30 호 :	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공고	29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◎ 예 규

제 422 호 :	물품분류에관한규정 폐지규정	30
제 423 호 :	수사요원전형고과제운용규정 폐지	30
제 424 호 :	경찰차량통제관리규정 폐지	30

◎ 사 령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7월 6일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642 호

서울특별시개포지구토지구획
정리사업시행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3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특별시 개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 3 조 (시행지구 및 면적)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, 양재동, 포이동, 대치동, 도곡동, 우민동, 염곡동, 역삼동, 원지동, 신원동, 서초동 일원 및 과천면주압리 일부지역 약 662 만㎡를 대상으로

한다.

제 4 조 (사업의 범위)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, 분합,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, 공공시설의 설치, 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(지장물 정리포함) 및 채비지의 관리처분과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.

제 5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사업시행자 (이하 "시행자"라 한다)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청내에 둔다.

제 6 조 (사업기간) 이 사업은 인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7 조 (회계에 관한 사항)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제 8 조 (공고) ①공고는 관보 및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할 수 있다.

②제 1 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사업비)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, 보조금,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법제 75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충당할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 10 조 (종전토지)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별도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.

1. 시행인가일 이후에 분할,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대장상의 면적
2.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 의 승인을 얻어 실측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자가 정한 면적
3. 영동구획정리사업 제척지구내 공사시행된 공공시설 편입토지, 미정리토지 및 기 매각체비지에 대한 종전 토지산정은 본 사업시행시 별도 방안을 강구한다.

제 11 조 (토지등의 평가) ① 정리전, 후의 토지각필지의 가격을 평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평가기관 (한국

감정원 토지평가사, 공인감정사) 이 평가한 금액을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이를 결정한다.

②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12 조 (환지계획의 기준)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방법을 기본으로 하고, 법제 48 조내지 제 51 조 및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제 11 조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유허가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로 환지 지정할 수 있다.

④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 3 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아파트단지내 토지로 국민주택 및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목적상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위치로 비환지할 수 있고, 국민주택 및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필요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는 아파트 단지내로 집단환지할 수 있다.

제 13 조 (특별지의 환지) ① 종전 토지의 지적이 근소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소토지기준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증환지할 수 있으며 토지계획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비환지할 수 있다. ② 종전 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환지할 수 있다.

제 14 조 (환지예정지 지정) 법제 56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 제 15 조 (환지예정지가 지정) 공공시설의 설치 및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 또는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행위허가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 14 조의 환지예정지 지정절에 환지를 가지정할 수 있다.

제 16 조 (청산)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청산금은 환지처분후 징수 또는 교부한다. 다만,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이전에 청산금을 교부하거나 또는 보류지에 권리면적을 정하여 청산시 보류지를 평가하여 금전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,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따로 시장이 정

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17 조 (토지의 사용)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 18 조 (토지의 관리)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,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9 조 (체비지관리 및 처분)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0 조 (공공용지의 부담) 공공용지에 대한 각 필지의 부담면적은 사업시행전, 후 토지면적의 평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.

제 21 조 (환지처분) 환지처분은 공사 완료보고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며, 다만, 사업시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일부지역에 대하여 환지처분할 수 있다.

제 22 조 (대리인 신고) 당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이의신청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

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이동신고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
2. 환지처분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자 할 때

② 제 1항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 24 조 (증명 및 분할) ①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제 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.
② 종전토지의 분할 및 환지계획의 변경은 사업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.

제 25 조 (시행 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7월 6일

서울특별시시장 김 성 배 인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1643 호

서울특별시가락토지구획

정리사업시행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3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서울특별시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 3 조 (시행지구 및 면적)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강동구가락동, 방이동, 오금동, 거여동, 문정동, 장지동, 마천동, 둔촌동, 성내동, 풍납동 이 동 각일부지역 약 745 만 m^2 를 대상으로 하며, 국립경기장용지내 토지는 환지계획에 포함하되 공사시행은 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사업의 범위)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, 분합, 기타의 구획변경,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(지상물 정리포함) 및 채비지의 관리처분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.

제 5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사업

시행자(이하 "시행자"라 한다)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청내에 둔다.

제 6 조 (사업기간) 이 사업은 일가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

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7 조 (회계에 관한 사항)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며,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제 8 조 (공고) ①공고는 관보 및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여 공고한다.

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할 수 있다.

②제 1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9 조 (사업비) ①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,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법제 7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충당할 수 있다.

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 10 조 (종전토지)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의 면적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별도 면

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.

1. 시행인가일 이후 분할,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대장상의 면적

2.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실측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별도로 시행자가 정한 면적

제 11 조 (토지등의 평가) ①정리전·후의 토지 각 필지의 가격을 평정하고자할 때에는 공인평가기관(한국감정원, 토지평가사, 공인감정사)이 평가한 금액을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이를 결정한다. ②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12 조 (환지계획의 기준) ①환지계획은 평가식방법을 기본으로 하고, 법제 48조내지 제 51조 및 제 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제 11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유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

등하다고 인정하는 위치로 환지 지정할 수 있다.

④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아파트 단지내 토지로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목적상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위치로 비환지할 수 있고, 국민주택 및 건설사업 계획에 필요로 하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토지는 아파트 단지내로 집단환지할 수 있다.

⑥국립경기장 용지내토지는 다른 위치로 비환지한다. 다만, 종전토지의 지적이 근소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특별지의 환지) ①종전토지의 지적이 근소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증환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비환지할 수 있다.

②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환지할 수 있다.

제14조(환지에정지 지정)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그

지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5조(환지에정지 가지정) 공공시설의 설치 및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 또는 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행위허가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4조의 환지에정지 지정전에 환지를 가 지정할 수 있다.

제16조(청산) 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②청산금은 환지처분후 징수 또는 교부한다. 다만,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이전에 청산금을 교부하거나 또는 보류지에 권리면적을 정하여 청산시 보류지를 평가하여 금전으로 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따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7조(토지의 사용)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18조(토지의 관리) 시행자가 환지에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환지에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,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지게 아니한다.

제19조(채비지관리 및 처분) 사업비에 충당될 채비지는 공공시설물 및 아파트 유지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, 채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0 조 (공공용지의 부담) 공공용지에 대한 각 필지의 부담면적은 사업시행 전·후 토지면적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.

제 21 조 (환지처분) 환지처분은 공사완료 보고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며, 다만, 사업시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전에도 완공된 일부지역에 대하여 환지처분할 수 있다.

제 22 조 (대리인 신고) 당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이의 신청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이동신고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
2. 환지처분에 지적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할 때

②제 1항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 24 조 (증명 및 분할) ①시장은

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제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.

②중전 토지의 분할 및 환지계획의 변경은 사업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.

제 25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7월 6일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 1644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조제 1항중 500억원을 3,800억원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시 특정건축물 정리비 특별회계 설치
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7월 6일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645 호

서울특별시특정건축물정리비
특별회계설치조례

제 1 조 (설치) 이 조례는 특정건축물
정리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이
있는 구역안의 시민생활여건 향상을
위하여 서울특별시 특정건축물
정리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
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.

제 2 조 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
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특정건축물 청리에 관한 특별
조치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

제 9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

2. 법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
하여 무상 양여 받은 토지의 사
용·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
발생하는 수입금

제 3 조 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
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
수 없다.

1.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구역 안

의 도로, 상·하수도 및 환경정리
에 필요한 경비

2.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

3. 소관재산의 관리 및 사무관리

4. 기타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하여
필요한 경비

제 4 조 (준용) 이 회계운영에 필요한
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1982년 7월 6일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◎서울특별시조례 제 1646 호

서울특별시특정건축물정리
에 관한조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특정건축물
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(이하 "법"
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 (이하
"령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
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정리대상) 특정건축물로서 1981.12.31 현재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건축물과 위법 시공건축물 (증·개축된 건축물을 포함하며, 이하 “대상건축물”이라 한다)을 정리대상으로 한다. 다만, 다음의 건축물은 대상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건축법 제 47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
2. 천막, 합판, 루핑, 비닐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과 음막, 토굴등 사회통념상 건축물로 볼수 없는것.

제 3 조 (적용) 대상건축물의 정리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4 조 (권한의 위임) 서울특별시장은 법에 의한 그의 권한중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외의 그의 권한의 전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령 제 2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상습 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의 지정
2. 서울특별시 특정건축물 정리비 특별회계의 설치운용

제 2 장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

제 5 조 (설치) ①특정건축물 정리심의위원회 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

다)는 구에 설치한다.

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은 구청 도시정비국장 및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건축, 도시계획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,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으로 한다.

제 6 조 (심의사항)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제 7 조 제 1호에 해당여부
2. 건축법 제 27 조 및 동법 제 31 조에의 적합여부
3. 건축법 제 32 조 및 동법 제 33 조에의 적합여부
4.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여부
5. 변소의 구조 및 오물의 처리 시설등
6. 건축물의 내장, 방화구획, 방화벽의 설치, 피난시설등
7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의 현저한 지장 여부
8. 시정명령 및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등에 관한 사항

제 7 조 (운영)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

한다.

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.

④간사는 구청 도시정비국 건축과 주무계장이 되고,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.

⑤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1984.6.30까지로 하며,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⑥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 (위원장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과 태 료

제 9 조 (부과대상자)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로서 법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자로 한다.

제 10 조 (용도지역별 가중치의 적용)령
제 10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가중치는 토지등급에 따라 별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11 조 (과태료의 징수) ①구청장은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령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과태료의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.

②과태료의 납입기한은 고지서의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.

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제 4 장 관 리 처 분

제 12 조 (대상토지) 재개발구역을 폐지한 구역안에서의 관리처분의 대상이 될 토지는 법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된 국·공유지(이하 "대상토지"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 13 조 (대상토지의 관리등) 대상토지의 관리와 처분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14 조 (연고권등) ①법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을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

점유에 따른 대상토지의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연고권을 인정하는 대상토지의 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200㎡이내의 면적으로 한다. 다만, 공공의 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구청장이 따로 인정하는 건축물의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토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③연고권이 있는 대상토지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

제 15 조 (매수신청) 대상토지를 매도 또는 대부 받거나 하는 자는 지적측량현황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토지매수 또는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납부방법) 대상토지의 매수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

에는 년 1 할의 이자를 붙여 5 년이내의 기간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 17 조 (해약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상토지 매매계약등을 해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제 3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매매계약등을 체결하였으나 소정기간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
2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등을 체결하였음이 판명된 때
3. 공익을 위하여 그 해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1984.6.30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② (폐지조례) 서울특별시 준공미필기존건축물 정리에 관한 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(별표 1)

용 도 지 역 별 가 증 치

토지 등급 용도지역별	(1) 상 업 지 역	(2) 준 주 거 지 역	(3) 준 공 업 지 역	(4) 주 거 지 역	(5) 공 업 지 역
65 이하	0.70	0.60	0.55	0.50	0.50
66-75	0.73	0.63	0.58	0.53	0.53
76-85	0.76	0.66	0.61	0.56	0.56
86-90	0.80	0.70	0.65	0.60	0.60
91-95	0.84	0.74	0.69	0.64	0.64
96-100	0.88	0.78	0.73	0.68	0.68
101-105	0.92	0.82	0.77	0.72	0.72
106-110	0.96	0.86	0.81	0.76	0.76
111 이상	1.00	0.90	0.85	0.80	0.8

용도지역별 토지등급별	(6) 주거 전용 지 역	(7) 전용 공업 지 역	(8) 자연 녹지 지 역	(9) 생산 녹지 지 역	(10) 기 타 지 역
40 이하	0.40	0.40	0.30	0.20	0.20
41-55	0.43	0.43	0.33	0.23	0.23
56-65	0.46	0.46	0.36	0.26	0.26
66-75	0.50	0.50	0.40	0.30	0.30
76-85	0.54	0.54	0.44	0.34	0.34
86-90	0.58	0.58	0.48	0.38	0.38
91-95	0.62	0.62	0.52	0.42	0.42
96-100	0.66	0.66	0.56	0.46	0.46
100 이상	0.70	0.70	0.60	0.50	0.50
-	-	-	-	-	-
-	-	-	-	-	-

(별표 2) 참조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지하철운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
포한다.

1982년 7월 9일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647 호

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1 항중 “ 7 원 82 전 ” 을 “ 8 원
21 전 ” 으로 한다.

별표 1 종류란중 통학정기승차권 다
음에 “ 노인소아정기권 ” 을 신설하고 운
임산정란은 “ 보통정기운임의 5 할 단, 학
생은 통학정리운임의 5 할 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82년 7월 1일부터 적
용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
세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1982년 7월 9일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송 달 표

원 부

납입필통지서

납입 고 지 서
납입 필 통 지 서

영 수 증

과 목	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			
48년도제	기책	번		
	수시	호		
주 소	구 동 로 가 번지 호			
성 명				
구 분	상환금	연체료	계	
토지매각대				
토지대부료				
변 상 금				
과 태 료 (무허가위법시공)				
합 계	납기내		원	
	납기후		원	
서기198 년 월 일자				
수입일부인	납입 고지서 수령자			
	영수자			

(고지서전달관청보관용)

과 목	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			
198년도제	기책	번		
	수시	호		
주 소	구 동 로 가 번지 호			
성 명				
구 분	상환금	연체료	계	
토지매각대				
토지대부료				
변 상 금				
과 태 료 (무허가위법시공)				
합 계	납기내		원	
	납기후		원	
수입일부인				

(수납은행보관용)

과 목	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			
198년도제	기책	번		
	수시	호		
주 소	구 동 로 가 번지 호			
성 명				
구 분	상환금	연체료	계	
토지매각대				
토지대부료				
변 상 금				
과 태 료 (무허가위법시공)				
합 계	납기내		원	
	납기후		원	
위 금액을 영수함.				
수입일부인	은행			
	서울특별시시금고 귀하			

(시금고용)

과 목	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			
198년도제	기책	번		
	수시	호		
주 소	구 동 로 가 번지 호			
성 명				
구 분	상환금	연체료	계	
토지매각대				
토지대부료				
변 상 금				
과 태 료 (무허가위법시공)				
합 계	납기내		원	
	납기후		원	
납기내 : 198 년 월 일한 납기후 : 198 년 월 일한 납부처 : 시내한국주택은행본지점 (단 납기후분은본통지서를 지참 구청에오셔서 고지서 를재발급받으셔야합니다) 198 년 월 일 구청장				
수입일부인				

(구수납부용)

과 목	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			
198년도제	기책	번		
	수시	호		
주 소	구 동 로 가 번지 호			
성 명				
구 분	상환금	연체료	계	
토지매각대				
토지대부료				
변 상 금				
과 태 료 (무허가위법시공)				
합 계	납기내		원	
	납기후		원	
위 금액을 영수합니다.				
수입일부인	영수자인			

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.

(주)은행채권자인이 없으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.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648 호

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2 호 중 “ 25.7 평 ” 을 “ 85 제곱미터 ” 로 하고 동조 제 3 호 중 “ 15 평 ” 을 “ 50 제곱미터 ” 로 한다.

제 4 조 제 1 항 중 “ 전용면적 25.7 평 ” 을 “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” 로 하고 동조 제 2 항 중 “ 전용면적 15 평 ” 을 “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” 로 하며, 동조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제 3 항 및 제 4 항으로 하고 제 4 항을 제 5 항으로 한다.

(3) 전용면적 50 제곱미터 초과 85 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(부속토지를 포함한다) 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자에 대한 등록세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등록세액의 100 분의 50 을 경감한다.

(4) 제 2 항 및 제 3 항의 경우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3 월, 보존등기된 공동주택을 취득한자는 취득일로부터 3 월을 경과한후 이 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2) (적용례) 제 2 조, 제 4 조의 규정은 1982. 5.26 일 이후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직원진료규칙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2년 7월 8일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980 호

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직원 진료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의료법 제 31 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직원 (이하 “직원”이라한다) 의 보건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청 부속의원 (이하 “의원”이라한다) 을 설치 운영하여 직원의 진료 및 건강상담에 응함으로써 행정효과 거양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대상) 서울특별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.

제 3 조 (업무) 의원에서는 직원에 대한 진료와 건강상담 기타 이에 부수한 업무를 처리한다.

제 4 조 (직원) ①의원 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의약과장 (의사) 이 겸임한다.

②제 3 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전담직원을 배치할수 있다.

제 5 조 (진료비) 진료비는 재료대만 징수한다. 재료대 산정은 구입가로 하고 10 원 미만은 절상한다.

제 6 조 (절차) ①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의뢰서를 제출하고 신분증

을 진료 담당직원에게 제시한다.

②진료담당직원은 진료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진료하고 본인에게 진료비를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, 진료를 받은 자는 그 대금을 5일이내에 시금고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.

(3) 원장은 매월 진료비를 익월 5일까지 재무국 재정기획과장에게 세입조정 의뢰한다.

제 7 조 (위임) 이 규칙 시행과 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47 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. 사업명 :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2. 사업주체 : 중구화현동 1가 194-15 동성종합건설(주) 대표 하영준
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
가. 위치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

산동 5가 4-13 외 1필지

나. 면 적 : 21,280.4

다. 건설규모 : 아파트 11층 1동 12층 3동
400 세대

상 가 2층 1동 및
부대복리시설

4. 사업시행기간 : 82.7 - 83.7.31.

1982. 7. 5.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48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인가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250 호 (81.7.4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435 호 (81.12.15) 로 결재 및 지적 승인된 강남구방배동 18-6외 17필지 학교용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강남교육구청공고 제 1 호 (82.1.12) 로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 고시 제 521 (81.12.31) 권한 위임 사항 내부 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7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방배동 18-6의 17필지

나. 사업의종류및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서래국민학교

다. 사업의규모

○ 부지면적 - 11,570 m^2 (3,500평)

○ 연면적 - 5,724 m^2 (금회시공 4,824 m^2)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

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:

○ 착수년월일 - 시행허가후 3개월이내

○ 준공예정일 - 착공일로부터 2년이내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자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(생략)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9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인가

1. 건설부 고시 제 421 호 (81.11.27)

로 개포지구 아파트건설사업 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고 제 15 호 (82.3.30) 로 공람공고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내 학교용지에 대하여 14일자 이해관계인에게 서류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시행령 제 25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 (81.12.31) 권한위임사항 내부 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7. 7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개포동 주공 아파트 단지내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개원국민학교

다. 사업의규모 :

○ 부지면적 15,540 m^2 (4,701평)

○ 연면적 5,235.75 m^2 (1,584평)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

○ 착공예정일 - 사업인가후 30일이내

○ 준공예정일 - 83.12.31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

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
권리명세 (생략)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
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규정에
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0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변경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8 호 (78.3.23) 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 허가되고 동고시 제 111 호 (79.3.9) 제 85 호 (70.3.4), 제 65 호 (81.3.10) 제 289 호 (81.8.3) 로 시행허가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시행령 제 25 조와 건설부고시 제 521 호 (81.12.31) 권한위임사항 내부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7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대치동산 54의
3 필지일대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
업(학교) 변경시행 단국중·고등학교

다. 사업의규모 :

- 대지면적 - 11,630 평
- 건축면적 - 4,544.72 평

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용산구
한남동산 8-3

학교법인 단국대학이사장 박정숙

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:

당초준공예정일 - 82. 5.30.

변경준공예정일 - 82.12.31.

바. 변경사항 : 준공기한 연기

사.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
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
권리명세 (생략)

아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
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 규정
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(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1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6 호 (72.11.6) 및 제 127 호 (73.7.26)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남구 삼성동 산 74-4 외 12 필지에 대하여 동 공고 제 247 호 (82.6.8) 로 시행사항 공람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(81.12.31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7. 7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삼성동 산 74-4 외 12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

다. 학교부지면적 : 32,083.9 평 (106,062.47)

라. 사업의 규모 : 학교부지내 경기교 기념관 설치 (연면적 2,666.3)

마. 사업시행자 : 재단법인 화동육영회 이사장 김 우 중

바. 사업기간 : 1982.6 - 1982.12.31

사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(생략)

아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(생략)

자.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.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2 호

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자
명의변경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4 호 (78.7.5) 및 동고시 제 348 호 (79.7.28) 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되고 동고시 제 492 호 (79.11.26) 로 시행자명의변경허가된 강남구 양재동 539 번지의 25 필지에 대하여 동공고 제 248 호 (82.6.8) 시행자명의변경사항 공람공고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명의변경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자 명의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(81.12.31)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7. 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 양재동 539 번지의 25 필지 일대

나. 사업의 규모 : 26,142 (동일)

다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시설 (주차장)

라. 사업예정기간 : 1982.12.30

마. 변경내용 : 사업시행자명의변경

당초 : 부산시 동구 대창동 3 가 61

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

대표이사 박 남 수

부산시동구범일동 252-767
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
 대표이사 박 남 규
 변경 : 부산시동구대창동 3 가 61
 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
 대표이사 박 남 수
 부산시동구범일동 252-767
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
 대표이사 박 남 도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(생략)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(생략)

아.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 바람.

◎서울특별시고시 제 253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건설부고시제 179 호 ('82.4.29) 로
 고덕지구 백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
 인 및 동지구내 도시계획시설 (학
 교) 변경 결정된 강동구상일동316-1

의 3 필 30,559㎡ (9,244평) 에
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
 설부고시 제 521 호 ('81.12.31) 의
 권한위임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학
 교) 시행을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 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
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
 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7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강동구상일동 316-1
 외 3 필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

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
명칭 : 상일여자중·고등학교

다. 사업시행자 주소·성명 :

강동구상일동 316-1

학교법인등록학원이사장 김충성

라. 사업의규모 : 지적 30,559㎡ (9,244평)

건축면적기준 5,487㎡

증축 7,449.38㎡

건축바닥면적 4,726.25㎡

마.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: '82.7.30~'87.7.30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
 서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
 의 권리명세서

위 치	지 목	지 적	소유권자이외의권리명세
강동구상일동 316-1	임 야	25,375	없 음
315	전	992	"
314-4	전	2,363	"
316-18	임 야	1,829	"
계		30,559	

사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

조 제 3 항의 관제인 주소, 성명

1) 주소 : 강동구상일동 316-1

성명 : 학교법인홍록학원

이사장 김 종 성

2) 주소 : 용산구후암동 164-11

성명 : 풍천임씨문화부사공파종중

3) 주소 : 용산구한강로 3 가65-228

성명 : 한국토지개발공사

아. 시행허가설제도서 : 별첨 (생략)

1. 제정사유

도심지의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도 전방교통이 혼잡하여 진행 신호주기중 그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인 교차로 상에서 정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무리하게 진입하므로써 교차로상에 정차하게 되어 측방 교통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.

2. 주요골자

도로교통법 제 44 조 (운전자 준수 사항) 제 9 호 (시도지사고시) 를 근거로 교차로상의 전방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할때는 진행 신호중이라도 그 교차로내에 들어가는는 아니된다는 규제 고시임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254 호

운전자준수사항지정고시

도로교통법 제 44 조 제 9 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.

1982. 7. 9.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교차로내의차량등정체시제차량 등의진입금지

1.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교차 하는 제차량은 그 진행하려고 하는 진로의 전방에 있는 차량등의 상황에 의하여 교차로 (교차로내에 도로표지등에 의한 정지선이 설정되어 있을때는 그 정지선을 넘어선 부분)에 들어간 경우 교차로내의 차량등의 정체로 인하여 그 교차로내에서 정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교차로상의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.

2. 이 고시는 1982. 8. 1. 부터 시행한다.

공 고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290 호

관인재교부및폐기공고

성동구청장(호적·병사용)의 직인을 관인규정 제 8 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,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교부 및 폐기함을 동규정 제 9 조 및 동규칙 제 6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1982. 7. 5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용일자 : 1982.7.15

가. 재교부직인 : 성동구청장(호적, 병사용) “별첨”

나. 폐기직인 : 성동구청장(호적, 병사용) “별첨”

인

영



공인명

성동구청장직인 및 제인(호적·병사용)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291 호

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설비) 준공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8 호(81.4.9)로 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설비) 시행허가된 송전 선로공사가 완료되었기 건설부 고시 제 521 호(81.12.31)의 권한위임 및 도시계획법 제 85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설비) 완료공고한다.

2. 관제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7. 6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구로구시흥동 576-1, 시흥동 561-2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설비 : 송전선로)

다. 사업규모 : 철탑 2 기연장 : 336 m

라. 사업자주소와성명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의도동 1-791

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김영준

마. 사업의허가 및 준공년월일 :

1981.4.9-82.7.6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292 호

K.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
아래와 같이 K.S 표시정지처분하였기
동법 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
이를 공고한다.

1982. 7. 5.

서울특별시 장

허가번호 : 제 2237 호

허가일자 : 80.11.27

제조업체 : 동일조명공업(주)

대표자 : 송 회 창

소재지 : 성동구성수동 2 가 277-38

규격번호 : KSC 7603

품 명 : 형광등기구

종류등급 : 일반용기구 스티터식 고역
울 일반형 20 W×2

처분기간 : 공고일로부터 3 개월

처분사유 : K.S 규격미달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293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94 호 (73.6.15)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된 강남구방배동 1514 번지 서문여자중·고등학교

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
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(81.12.31)
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
행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한다.

2. 관제 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
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
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7. 7.
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시행지 : 강남구방배동 1514
번지

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도시계획사
업 (학교) 서문여자중·고등학교

다.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:

강남구방배동 1514

학교법인 성산학원 대표이사 이 정 금

라. 사업의규모 및 면적 :

○대지면적 - 21,954(6,641 평)

○기존건축면적 - 4,545.94(연건평17,051)

○증축면적 - 189.53(연건평 709.57)

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:

○착공예정일 - 82. 7.25.

○준공예정일 - 82.12.31.

바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 일간

사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
재지, 지목, 지적, 소유권 이외의
권리명세 (생략)

아.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법 4 조
3 항의 규정에 의한 관제인의
주소성명 (생략)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294 호

묘목및종자수출추천요령

82년도 하반기 및 83년도 상반기
수출입기별 공고 총칙 제 6 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
수출추천품목에 대한 수출추천요령을
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2. 7. 7

서울특별시 장

다 음

1. 추천대상품목

CCCN	추천대상품목	비고
0602	산림사업용 묘목 및 관상수 (구근, 과, 삽수, 접수 및 지하경 포함) 단, 산림수종 3년, 관상수 5년 이상의 관상분재, 묘포장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제외함.	
1203	산림사업용 및 관상수종자	

2. 추천범위 및 기준

가. 시·도내 수급잔여분에 한함.

나. CCCN 0602 : 소나무류, 잎갈나무류, 잣나무류, 삼나무류, 편백, 리기테다. 밤나무, 호도나무의 묘목은 사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을것.

다. CCCN 1203 : 잎갈나무류, 삼나무류, 편백, 리기테다의 종자는 사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을것.

3. 처리기간 : 즉시

4. 구비서류

가. 수출허가 (승인) 신청서 5 부

나. 수출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
1 부

부 칙

이 요령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◎서울특별시 공고제 295 호

1. 서울특별시고시제 292호 ('81.8.5) 시행허가 및 서울특별시고시제 9호 ('82.1.5) 변경허가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

85조 1항 및 건설부고시 제 521호('81. 12. 31)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완료공고한다.

2. 본 사업에 대한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2. 7. 7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잠실동 체비지 1-1

나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(학교)

명칭 : 정신여자중, 고등학교 체육관 증축

다. 사업의규모

1) 지 적 : 42,711.73 m^2

2) 건축면적 : 2층 1,765.59 m^2

라. 사업시행자주소 : 잠실동체비지 1-1

성명 : 학교법인 정신

학원이사장 박종렬

마. 사업시행기간 :

'81.8.10 ~ '82.5.30

바. 준공도면 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96 호

환지 계획변경인가및
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

1. 서울특별시공고 제 178호로 환지 계획변경 공람공고한 잠실토지구

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 지정공고한다.

2. 환지예정지 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로 통지한다.

1982. 7. 8.

서울특별시장

(환지예정지변경내역)

가. 사업명 :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

나. 변경면적 : 1,592.4 m^2 (481.7 평)

다. 변경위치 : 강동구 석촌동

41-14의 2필

라. 변경내용 : 사업계획 일부변경 및
환지계획 변경

(도서는 생략)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297 호

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
및 환지예정지지정

1. 건설부공고 제 37호('79. 3. 29)로 사업시행인가된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환지

계획을 수립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인가하고 동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
2. 본 공고로 동법 제 57조 제 1항에 의한 환지의 사용수익의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하며,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완료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사용수익을 부여한다.

1982. 7. 8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명 :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

나. 시행면적 : 1,474,896 m^2

(446,156 평)

다. 시행위치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, 신도림동 및 영등포구 대림동, 도림동, 신길동 각일부

라. 기 타 :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(도서는 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98 호

환 지 처 분 공 고

1. 당시가 '74.12.6'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얻어 사업시행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하였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조에 의하여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,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2. 7. 8.

서울특별시장

- 다 음 -

가. 사업명 :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

나. 환지처분대상위치 : 강동구 방이동, 삼전동, 석촌동, 가락동, 신천동, 잠실동

다. 환지처분면적 : 1,041,000

라. 관계도서의 열람 :

1) 환지처분내용 : 지번, 지목, 지적증감에 대한 관계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

2) 청산금 : 당시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
마. 공부정리 : 지금까지 사용하여온

공부상의 지번, 지목, 지적은 환지처분내용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동변경된 사항을 당시에서 공부를 정리할 것이나 징수청산금 납부대상토지는 청산금 납부 즉시 정리되며, 체비지 소유자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동 이전등기절차를 취하시기 바라며 (구비서류: 매도증서 및 위임장, 교부신청서(소정양식) 체비지계약서 및 명의변경승인서, 확정된 토지대장등본 1부,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)

바. 청산금의 징수교부: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의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공부의 열람후에 별도로 통지할 것이나 징수청산금은 납입고지이전이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◎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고제 30 호

교육공무원명예 퇴직수당지급신청공고

교육공무원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82.8월말 교육공무원명예 퇴직수당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. 수당지급대상자

공립초, 중등학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의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.

가. 연령

1) 60 세 이상

2) 신체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경우 55세 이상

나. 경력 (교육경력, 교육연구경력, 교육행정경력 합산)

1) 30 년 이상

2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 년 이상

가)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.

나) 재직중 각급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자.

다) 재직중 시, 도단위 이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자.

2. 수당지급일: '82.8.31(화)

3. 신청기간: '82.8.2 ~ 8.7(6일간)

4. 신청절차: 소정의 신청서 건강진단서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소속 기관장 및 감독청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.

5. 수당지급액: 기준보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

6. 지급절차: 가. 대상자의결정통지: 대상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장 또는 소속 교육구청장에게 통지한다

나. 수당지급장소: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

7. 기타사항: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청장 또는 당 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982. 7. .

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

폐 지 사 유

물품분류에 관한 규정내용이 물품
관리법 및 동시행령 동 시행규칙에
세부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고 실
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함.

예 규

◎ 서울특별시예규제 422 호

물품분류에 관한 규정 폐지 규정을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2. 7. 9.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물품분류에 관한 규정 폐지

물품분류에 관한 규정 (예규제 368
호 77.12.28)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폐 지 사 유

내무부예규 제 471 호 (79.5.2) 수사
요원임용 및 고과평점요강 제정시행
에 따라 그 내용이 중복됨으로 폐
지코자 합니다.

◎ 서울특별시예규제 423 호

수사요원 전형 고과제 운용규정 폐

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2. 7. 9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수사요원전형고과제운용규정 폐지
수사요원전형고과제 운용규정 (예규 제
286호 75.2.15)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폐 지 사 유

1. 내무부훈령 제 548 호 경찰차량관
리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
2. 중복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
3. 상위 훈령에 따라 시행토록 하
기 위하여 폐지함.

◎ 서울특별시예규제 424 호

경찰차량통제관리규정 폐지 규정을
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82. 7. 9.

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

경찰차량통제관리규정 폐지

경찰차량통제관리규정 (예규제 141 호
67.2.7)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사

령

© 1982 년 7 월 5 일자

령 제 338 호

교통국 (안전담당관) 결적을 명함.

종합기술시험연구소
지방토목기정

서 무 전

단, 교통국 근무를 명함.

© 1982 년 7 월 5 일자

령 제 339 호

성 명	발령사항	현 부 서	직 급
양영규	지하철도과파견근무(82.7.5-82.8.4) (지하철안전전담요원)	동대문구토목과장	토 목 기 좌
최동순	" (")	종합건설본부	지방토목기사
정지교	" (")	"	"
공경열	" (")	성 복 구	"
김영환	" (")	지하철건설본부	지방토목기사보
유기운	" (")	"	"
이성기	" (")	"	"

© 1982 년 7 월 5 일자

령 제 340 호

성 명	발령사항	현 부 서	직 급
송수환	울지연습 '82 계획단 요원근무를 명함 ('82.7.5 - 82.8.9)	행 정 과	지방행정주사
이상현	"	법 무 담 당 관	"
백재승	"	시 정 개 발 담 당 관	지방행정주사보
이길홍	"	총 무 과	" 주 사
정운순	"	"	지방통신기사보
임학기	"	민 방 위 과	지방토목기사보
황종화	"	도 로 과	" "
이범동	"	민 방 위 과	지방행정주사보
신경순	"	농 축 과	지방농림지원

성 명	발령사항	현 부 서	직 급
정인국	을지연습 '82계획단 요원근무를 명함. (82.7.5 - 82.8.9)	연 료 과	지방행정주사
고완재	"	사 회 과	지방행정주사보
장창재	"	보 건 위 생 과	지방보건기사
진태홍	"	공 월 녹 지 과	지방행정주사
정명섭	"	건 설 행 정 과	지방행정서기보
박주남	"	"	지방기계기사보
김종용	"	건 축 지 도 과	지방행정주사보
성기충	"	예 산 담 당 관	" "
오익환	"	공 보 관	" 주 사
천종수	"	운 영 과	지방별정직 6급
◎ 1982년 7월 5일자 령제 342 호 서 대 문 구 유 학 조 지 방 토 목 기 좌 지 하 철 도 과 파 견 ('82.7.5-82.8.4) (지하철안전 전담요원) 관 약 구 이 원 길 지 방 토 목 기 좌 지 하 철 도 과 파 견 ('82.7.5-82.8.4) (지하철안전 전담요원) ◎ 1982년 7월 1일자 령제 343 호 북 부 위 생 처 리 장 조 규 동 지 방 기 계 장 시 보 (6 등 급) 지 방 기 계 장		북 부 위 생 처 리 장 이 정 수 지 방 기 계 장 시 보 (6 등 급) 지 방 기 계 장 북 부 위 생 처 리 장 민 경 기 지 방 기 계 장 시 보 (6 등 급) 지 방 기 계 장 북 부 위 생 처 리 장 송 택 근 지 방 기 계 장 시 보 (6 등 급) 지 방 기 계 장 북 부 위 생 처 리 장 김 재 선 지 방 기 계 장 시 보 (6 등 급) 지 방 기 계 장	

북부 위생 처리장 지방기계원시보 (8등급)		김 근 모	중 구 산 업 과 지방행정주 사	임 상 덕
지방기계원			법무담당관실 파견근무 ('82.7.7 - 82.12.30)	
◎ 1982 년 7 월 10 일자		령 제 344 호		
		유 재 분		
구로구보건소 1호봉 지방보건기원보시보 (병 리)			◎ 1982 년 7 월 8 일자	령 제 346 호
◎ 1982 년 7 월 7 일자		령 제 345 호	성 동 구 옥 수 동	
동 작 구 동 작 동 지 방 행 정 주 사		안 덕 회	지 방 행 정 서 기 보 시 보	심 화 경
통계 전산 담당관실 파견근무 ('82.7.7 - 82.12.30)			중 구 근무를 명함.	
◎ 1982 년 7 월 8 일자				령 제 347 호
성 명	발 령 사 항		현 부 서	직 급
한유식	복직을 명함.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3 월 에 처함.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		강 서 구	지 방 행 정 주 사
윤관여	복직을 명함.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 2 월에 처함		"	지 방 행 정 서 기

◎ 1982 년 7 월 8 일 자

령 제 348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신수목	지하철 안전점검 전담요원에 임함. ('82.7.8 - 82.8.4)	지 하 철 도 과	지방행정사무관
원윤식	" "	서대문구현저동	" 주사보
황달수	" "	상하수국하수과	" "

◎ 1982 년 7 월 7 일 자

령 제 349 호

도 봉 구
지 방 화 공 기 좌 안 종 근

용 산 구

환 경 과
지 방 화 공 기 좌 조 성 학

도 봉 구

강 동 구
지 방 화 공 기 좌 정 동 진

환경과 환경 1 계장

도 봉 구
지 방 보 건 기 사 보

한 상 은

성 북 구

◎ 1982 년 7 월 8 일 자

령 제 350 호

강 서 구
지 방 행 정 사 무 관

방 한 의

복직을 명함.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각 호의
규정에 의하여 정직 3 월에 처함.

('82.7.8 - '82.10.7)

◎ 1982 년 7 월 10 일 자

령 제 351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방우달	은 평 구	기획관리실에 산담당관	지방행정주사보
이양섭	기획관리실	보건사회국 부녀청소년과	" "
추진갑	강 남 구	올림픽준비기획반	" 주 사

성 명	발령사항	현 부 서	직 급
김양기	감 사 관	구로구시흥 4 동	지방행정주사
윤용태	강 동 구	감사관사회지도담당관	" "
염훈현	강남구보건소	내무국총무과	" "
정신남	내 무 국	강남구보건소	" "
송영무	보건사회국	동대문구세무 2 과	" "
김종상	도시계획국	강 남구세무 1 과	" "
유양섭	죽도수원지 사무소	남산공원관리 사무소	" 서 기
이용대	강 남 구	보건사회국 보건위생과	" 주사보
신승춘	보건사회국	민방위국운영과	" "
남경우	관 악 구	불광동보조수원지 사무소	" 서기보
이종국	불광동보조수원지	서대문구흥제 1 동	" "
이유석	북부위생처리장	은평구시민봉사실	" 주사보
이종린	기획관리실	강동구총무과	" "
이 회	보건사회국	영등포구세무 2 과	" "
박신원	교 통 국	보건사회국 보건위생과	" 주 사
황건식	성 북 구	북부수도관리사업소	" "
이영웅	강 남 구	은평구갈현동	" 서 기
최정갑	상하수국	도봉구세무 2 과	" 주 사
김기성	자동차관리사업소	기획관리실통계전산담당관	" 주사보
유윤호	"	동작구사당 1 동	" 서 기
정동운	"	도봉구총무과	" "
백정진	교 통 국	서대문구주택과	" 주사보
이종하	"	성북구시민봉사실	" "
이수철	내 무 국	구로구새마을과	" "
양봉익	공 보 관	서대문구재무과	" "
김성래	"	도봉구 "	" 서 기
신동석	근로청소년회관	영등포구총무과	" "
강순일	남산공원관리사무소	종로구창신 3 동	" "
임순봉	산업경제국	환경녹지국공원녹지과	" 주사보

◎ 1982 년 7 월 8 일 자

령 제 352 호

◎ 1982 년 7 월 1 일 자

영등포수원지사무소장
지 방 공 업 기 정

배 원 근

강 동 구 보 건 소
지 방 간 호 기 원 보

김 경 희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, 2 호
의 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.

전라북도 전출을 명함.

서 울 특 별 시 장